

#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홍 보 부 -

환경부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오는 1996년 7월 1일부터 강화 적용하게 된다.

환경부는 강화된 내용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을 지난 4월 1일 개정하고 공포, 시행키로 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설치예정인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처리구역내의 건물이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완공이후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2. 축산업자가 축산단지 등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절차를 정한다.

3. 수질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 등에 적용하는 방류수수질기준을 '96년 7월 1일부터 강화한다.

4. 정화조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설계·시공업자 또는 정화조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5. 내부청소가 용이하지 아니한 임호프탱크방법과 살수관의 수평유지가 곤란한 살수형 부패탱크방법을 정화조의 구조·규격 및 성능기준에

서 삭제함으로써 이 방법에 의한 정화조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도록 한다.

이에따라 '96년 1월 1일부터 강화키로 한 특정지역, 기타지역의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이 6개월 연장된 '96년 7월 1일부터 적용·강화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

지역	구분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
	항목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50 이하	150 이하
	부유물질량 (mg/l)	50 이하	35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150 이하	500 이하
	부유물질량 (mg/l)	150 이하	500 이하

특정지역 즉,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지하수 보존구역,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의 허가능가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와 부유물질량(SS)이 각각 50mg/l 이하, 신고능가는 BOD와 SS가 각각 350mg/l 이하, 기타지역으로는 허가

특정지역의 허가능가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와 부유물질량(SS)이 각각 50mg/l 이하, 신고능가는 BOD와 SS가 각각 150mg/l, 350mg/l 이하

농가의 BOD, SS가 각각 150mg/l 이하, 신고농가의 BOD, SS가 각각 500mg/l 이하로 강화된다. 다만, 공동축산폐수 정화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축산폐수시설이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특정지역내에 설치된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96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1996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기준

구분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150 이하	1,500 이하
부유물질량 (mg/l)	150 이하	-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표 3>과 같고 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분뇨처리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은 지금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P)이나 질소(N) 성분도 규제대상이 된다. 총질소(N)와 총인(P)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적용된다.(<표 4> 참조)

<표 3>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기준

구분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부유물질량 (mg/l)	대장균 수 (개/ml)	기타 (mg/l)
분뇨처리시설		40 이하	70 이하	3,000 이하	-
축산폐수처리시설		40 이하	70 이하	-	-

<표 4>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

구분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부유물질량 (mg/l)	대장균 수 (개/ml)	기타 (mg/l)
분뇨처리시설		3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총질소 : 120 이하 총인 : 16 이하
축산폐수처리시설		30 이하	30 이하	-	총질소 : 120 이하 총인 : 16 이하

정부에서는 수질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 정화시설 등에 적용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였으나 특정지역에서의 BOD와 SS를 각각 50mg/l 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며, 이에 정부는 행정위주의 규제보다도 정화시설과 운영에 대한 교육과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업체들의 연구·개발과 농장주들의 환경의식의 개혁도 따라 주어야 환경시대에서 더욱 성장하는 축산이 될 것이다.